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72 발의연월일: 2025. 3. 19.

발 의 자:정점식・인요한・서천호

김정재・강대식・한기호

김종양 · 김미애 · 고동진

조지연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통계청 발표에 따르면, 2014년 112만 700가구(농가인구 275만 1,700명)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3년 99만 9,000가구(농가인구 208만 8,800명)로 10.8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한편 전체 농가인구수 중 6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2014년 136만 8, 400명에서 2023명 140만 7,600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농가인구의 67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50세 미만 농가인구는 2014년 8 4만 4,200명에서 2023년 36만 9,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됨.

어가수(해수면 기준) 역시 2014년 58,791가구에서 2023년 41,775가구로 10년 새 28.9%가량 감소하였으며, 이에 비례하여 어업인 수도 2014년 141,344명에서 2023년 87,115명으로 급감하는 상황에 이르렀음.

특히 전체 어업인 수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4년 44%(62,560명)

에서 2023년 65%(56,762명)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촌 지역 역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.

이러한 상황을 일찍이 인식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·추진해 왔지만,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. 이러한 국가 등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현행법 상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의 육성·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정책이 부족한 점도 한 요인이므로 후계농어업인의 육성·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.

이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,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,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의 육성과 함께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로 명시함(안 제3조).
- 나.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후계농어업인

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이 포함되도록 함(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).

- 다. 제13조(청년농어업 우대)을 제10조(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)와 병합하여 한 조문으로 함(안 제10조).
- 라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제1항 신설).
- 마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효율적인 농어업 작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, 경영정보화, 전문인력의 육성, 창업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제2항 신설).
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육성"을 "육성하고,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"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 중 "강화를"을 "강화 및 첨단장비 조작 등을"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

제10조의 제목 중 "고용에 대한 지원"을 "고용 지원 및 우대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후계농어업인 세제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에게「조세특례제한

- 법」 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효율적인 농어업 작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, 경영정보화, 전문인력의 육성, 창업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		
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	무)		
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<u>육</u>	<u>भ</u>		
<u>성</u> 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	성하고,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		
인 시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	<u>성장을 지원</u>		
한다.			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	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2		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<u>강</u>	2 <u>강</u>		
<u>화를</u> 위한 교육 방안	화 및 첨단장비 조작 등을		
3. • 4. (생 략)	3.•4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5.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		
	를 위한 홍보방안		
<u>5.</u> (생 략)	6 <u>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
제10조(청년농어업인 <u>고용에 대</u>	제10조(청년농어업인 <u>고용 지원</u>		
<u>한 지원</u>) (생 략)	<u>및 우대</u>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		
	부분과 같음)		

<신 설>

제13조(청년농어업인 우대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 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 립・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 인을 우대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 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후계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 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.

제13조(후계농어업인 세제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촉진 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에게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 계농어업인의 효율적인 농어업 작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 장비 현대화, 경영정보화, 전문 인력의 육성, 창업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.